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8,442,000	28,753,260
일반회계	855,940,000	25,678,200
특별회계	102,502,000	3,075,060
공기업특별회계	88,378,000	2,651,340
상수도사업	34,640,000	1,039,200
하수도사업	53,738,000	1,612,140
기타특별회계	14,124,000	423,7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64,000	67,9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841,000	55,23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560,000	46,800
주택사업	200,000	6,000
주차장설치사업	350,000	10,50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65,000	4,95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450,000	13,500
의료급여기금사업	2,250,000	67,500
공공급식지원센터	5,044,000	151,3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73,11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